

울산지방법원 2018. 7. 20 선고 2018가단5651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

피고A

변론 종결2018. 7. 6.

판결 선고2018. 7. 20.

주 문

1.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와 2004. 11. 30. 접수 제9020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전기흥

별지